2022학년도 법정의무 폭력예방교육 운영계획(안)

1 배 경

□ 국가기관, 지자체, 각급 학교의 장은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**4대 폭력 예방교육**(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)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 제출 필요

○ 기관장·고위직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, 구성원의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 **부실기관**으로 평가하고, 인터넷·신문 공표 및 특별교육 등 **패널티 부여**

* (부실기관 기준) △기관장(총장) 미이수, △고위직(부총장·실처장,전임교원 등) 70% 미만, △직원 참여율 75% 미만, △재학생 50% 미만, △실적 미제출·허위제출 △점검 기준표 70점 미만

< 4대 폭력 예방교육 법령 근거(상세내용 : 참고1) **>**

성희롱	성매매	성폭력	가정폭력
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, 제31조	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	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	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

2 교육개요

□ **(대상)** 기관장(총장)을 포함한 전 직원(교원, 직원, 조교 등) 및 재학생(대학원생 포함)

○ **(교원)** 총장, 전임교원, 비전임교원(겸임교원 및 시간강사 포함)

▸ 대학정보공시(6-가-1. 전체 교원대비 전임교원 현황)을 준용하되,
① 휴직, 연수 등으로 2022학년도에 학교에 근무하지 않거나,
② 기타교원(비전임교원) 중 2022학년도 강의가 없는 교원은 제외

○ **(직원)** 대학교 소속 직원, 공시되지 않은 조교·외주직원·사회복무요원

▸ 대학정보공시(14-사. 직원 현황)을 준용하되,
① 휴직, 연수 등으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은 제외
② 공시되지 않은 조교·외주직원·사회복무요원 등은 포함

○ **(재학생)** 2022학년도 기준 한밭대학교 재학생(대학원생 포함)

□ **(교육기간)** 2022년 6월 1일 ~ 11월 30일

□ **(이수기준)** 기간 내 각 과목별 약 1시간씩 **총 4시간** 교육 수강

○ **사이버한밭**(https://cyber.hanbat.ac.kr) e-러닝에 **자동 탑재** 되어 있는 과목 수강시 자동 이수 (**과목명 : 폭력예방 법정의무 교육**)

- 동영상 수강 후 시험(형성평가) 및 설문까지 완료하셔야 최종 이수

※ 교육을 이수한 분은 총장 명의 이수증 출력 가능

□ **(교육방법)** 교육기간동안 상시 **사이버 한밭**으로 운영 및 **대상별 별도교육**

○ **기관장·고위직***은 사이버한밭 이외에 **별도 추가교육** 실시 **의무화**(22년 여성가족부 지침)

▸ 기관장·고위직 대상 추가교육 운영
① 실시간 온라인(Zoom) 교육 : 8월, 10월 예정
*** (고위직) 전임교원(정교수, 부교수, 조교수), 사무국장, 실장·과장**

○ **신규자 대상** 사이버 교육 운영(상시)

- (인사계약 업무 부서) 신규 임용자에게 기한 내에 교육 수료 및 수료증 제출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

▸ 한밭대학교 나라배움터(hanbat.nhi.go.kr)
- (과목명) 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
* 신규 임용자는 **2개월 이내**에 교육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

※ 2022년 신규 임용자도 사이버 한밭 교육 탑재함(5월 17일 기준)

○ 외국어(중국어, 영어) 사이버 콘텐츠 사용 희망자

- 사이버한밭 e-러닝(과목명: 폭력예방 법정의무 교육-English/中文) 외국어 사용자 별도 신청 후 분반 개설 및 운영

○ 전 구성원 대상 추가 실시간 온라인 교육(12월 예정)

- 교육 미 실시자 등 대상으로 추가 온라인 4대 폭력예방교육 운영예정

3 결과 제출

□ **(제출대상)** 사이버 한밭(폭력예방 법정의무 교육)이외 **타 기관**에서 **교육 이수자만 제출**

- (예시 1) 신규자 나라배움터 사이버교육 이수자
- (예시 2) 비전임교원 등 타 기관에서 교육 이수자 등

※ 수료증 제출시 必, 교육기관명·교육명·교육시간 정보 필히 기입
사이버 한밭 e러닝 교육 완료자는 자동이수 처리 되며 별도 제출서류 없음

□ **(제출내용)** **이수자 명단**과 출력한 과목별 **이수증**

□ **(제출방법)** 학생처 **인권센터**로 공문 제출(추후 재안내 예정)*

* 대학본부는 부서별, 단과대학은 학과별, 산학협력단은 산하 사업단별로 취합하여 제출

□ **(제출기한)** 2022. 11. 30.

□ **(기타문의)**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실 (☏ 828-8625)

참고 : 1. [대학] 폭력 예방교육 관련 법령
2. 2022년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른 부진기관 선정 기준 이수율

참고 1 [대학] 폭력 예방교육 관련 법령

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5조(성폭력 예방교육 등)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,「유아교육법」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,「영유아보육법」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,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,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,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·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,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,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③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및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

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

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·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1.「정부업무평가 기본법」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
2.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
3.「지방공기업법」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
4.「초·중등교육법」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

⑨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⑪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,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4조의3(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) ①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,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,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

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

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·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1.「정부업무평가 기본법」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
2.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
3.「지방공기업법」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
4.「초·중등교육법」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

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⑨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,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참고 2 2022년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른 부진기관 선정 기준 이수율

구분[1]	성희롱 예방교육	성매매 예방교육	성폭력 예방교육	가정폭력 예방교육
대학(원)생	-	-	50% 이상	50% 이상
종사자 (기관장, 고위직, 신규자, 비정규직 모두 포함)	75% 이상	75% 이상	75% 이상	75% 이상
기관장	이수	이수	이수	이수
고위직[2]	70% 이상	70% 이상	70% 이상	70% 이상
신규자[3] 및 비정규직[4]	70% 이상	70% 이상	70% 이상	70% 이상

1) 해당 기준 미달성 시 우리 대학이 **부진기관**으로 선정됨.
2) 전임교원(정교수, 부교수, 조교수), 사무국장, 실장, 과장
3)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**2개월** 이내에 교육 실시
4) 대학회계조교, 무기계약직(공무직), 기간제·시간제 근로자, 인턴, 사회복무요원 등

○ 이행사항 : 기관장의 책임하에 성희롱 방지조치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각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고 실적을 제출

○ 후속조치 : 실적 제출시 교육을 부실하게 운영한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및 기관명 공표, 예방교육 개선계획서 제출